

2012



규제정책 및 관리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OECD 규제정책위원회

(Regulatory Policy Committee)

규제개혁위원회의 임무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에 있어 규제의 질과 규제개혁의 역량을 향상 및 강화 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공관리 지역개발국(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또는 GOV)의 규제정책과(Regulatory Policy Division)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체계 설계와 정책 집행에 대한 GOV 특유의 강조는 다양한 사회 환경과 시장환경에서의 우수사례의 상호적 학습과 확산을 지원한다. 국가들이 보다 나은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모두 지속가능한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집행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규제정책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우리 웹사이트인 <http://www.oecd.org/regreform/regulatory-policy/> 을 참조하거나 Nikolai Malyshev (nikolai.malyshev@oecd.org), Céline Kauffmann (celine.kauffmann@oecd.org) 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OECD 사무총장 서문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는 거버넌스와 규제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고,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경제적 불안 속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 규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신뢰를 다시 주입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본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은 글로벌 위기 이후 처음 만들어진 규제정책 관련 포괄적 국제선언문입니다. 본 권고안은:



» 규제체제의 설계, 집행, 평가를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칙, 메커니즘, 제도에 관한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지도를 정부에게 제공합니다.

»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효과적인 이용에 대하여 정부에게 조언합니다.

» 범정부적 방식을 규제개혁에 도입하도록 요청하며, 부문간 및 국가간의 상호연결성으로 인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조정, 소통, 협력을 강조합니다.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규제의 질과 규제개혁 역량을 향상 및 강화시키는 것이 임무인 OECD 규제정책위원회가 본 규제지도서를 만들었으며, 이는 OECD의 10년이 넘는 체계적 규제개혁 집행경험의 근거가 확실한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 권고안은 1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단체, TUAC, BIAC, OECD 위원회, OECD 사무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OECD 권고안은 보다 좋은 삶을 위한 보다 좋은 규제를 촉진하려는 회원국들의 통찰, 인정, 그리고 정치적 의지를 나타냅니다. 회원국들이 이 권고안을 효과적인 정부를 지원하고, 더욱 번창하고 통합적이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권고안을 활발히 활용하고 이행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OECD 규제정책위원회 회장 서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아래, 올바른 규제체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명백해졌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규제가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좋은 규제를 달성한다는 것은 힘들고 끝이 없는 일입니다.

새롭게 나온 이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은, 규제정책위원회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OECD 회원국을 검토하여 식별한 모범관행에 대

한 세밀한 평가의 결실입니다. 이 권고안은 이 복잡한 정책분야에서 사고의 성숙과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본 권고안은 규제의 품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조직적 거버넌스체계를 개발합니다. 또한 정부에게 체제개발과 규제관리도구의 적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고품질의 규제를 개발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자체평가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나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2010년 10월에 개최된 OECD 국제 컨퍼런스인 *Regulatory Policy: Towards a New Policy Agenda*의 참석자들은 국가들이 현재 직면하는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바른 규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규제정책을 지도하는 새로운 원칙을 요구했습니다.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은 그 뒤 몇 달 동안 규제정책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내부적 논의뿐만 아니라 권고안 초안에 대한 폭넓은 공공협의도 거쳤습니다.

본 권고안은 규제 품질의 조직적 개선에 필요한 정책, 실천, 그리고 체계에 관하여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더 명확한 대화를 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벤치마킹 사례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현재 역량이 낮지만 보다 나은 규제 거버넌스를 집행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조언의 체계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규제정책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으로서 본 권고안을 지지하고 권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Gary Banks AO

OECD 규제정책위원회 위원장

호주 생산성위원회 위원장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본 위원회는,

1960년 12월 14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약 (Convention o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중 1, 2a, 3, 5b조를 유념하며;

규제의사결정을 위한 OECD 참조평가표를 포함하여 정부규제의 질 개선에 관한 위원회 권고안을 유념하며;

1997년 OECD 규제개혁 보고서, 2005년 규제의 질 및 성과 지침, 규제개혁 APEC-OECD 통합 평가표, 그리고 경쟁평가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C(2009)130]을 유념하며;

규제의 질과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와 체계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이룩한 상당한 진전을 의식하며;

정부들이 직면하는 오늘과 근미래의 도전과 문제는 지금까지의 OECD 결정이 조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규제 차원을 포함함을 의식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른 규제체계에 달려있고 또한 이를 강화시킴을 인식하며;

규제는 정부가 경제 번영을 촉진시키고 복지를 강화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수단 중 하나임을 인식하며;

바르게 설계된 규제는, 규제비용을 능가하는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사회적 평안(wellbeing)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규제가 만들어지고 평가되고 개정되는 방식에 대한 정부 정책체계로서의 규제정책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은 최고위급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좋은 거버넌스가 정부 부처간 및 수준간의 경계를 넘어 이행될 것을 요구함을 의식하며;

금융위기와 경제주기, 혁신, 사회적 변화, 환경문제, 새로운 성장의 원천 추구 등은 바르게 작동하는 시장과 사회를 위한 규제체계의 중요성과 분야간 및 국가간의 상호연결성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을 의식하며;

OECD가 국제사회에서 규제개혁과 범정부적 접근법에 대한 바른 규제관행 집행을 촉진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의식하며;

규제정책 위원회는 2009년도에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규제 품질과 개혁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의식하며;

I. 회원국에게 다음을 추천한다:

1. 규제 품질에 대한 명시적인 범정부적 정책을 위해 정치적 최고수준에서 노력해야 한다. 그 정책은 규제가 활용될 경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득이 비용을 넘어서고 분배효과가 고려되었으며 순 편익이 최대화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목적과 집행체제를 가져야 한다.
2. 규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포함하여 개방정부 원칙을 고수한다. 이는 규제 시 공익을 피하며 규제에 영향을 받고 관심을 갖는 자의 타당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규제안 초안 작성과 이를 위한 분석의 품질관리 준비과정에 대중이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온라인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규제가 포괄적이고 명확하며 당사자들이 쉽게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3. 적극적으로 규제정책 과정과 목표를 관리하고, 규제정책을 지지하고 집행하고, 그럼으로써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한다.
4.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이하 RIA)을 새로운 규제제안 시 정책과정의 초기단계에 통합시킨다.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식별하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가 정책목표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지 평가한다. 규제 이외의 방법을 고려하며 최상의 접근법을 식별하기 위해 분석된 여러 접근법 간의 장단점을 식별한다.
5. 명확하게 정의된 정책목표와 대조하여 주요규제를 평가하는 조직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는 규제가 최신적이고 비용이 정당화되고, 비용대비 효과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6. 규제정책, 개혁 프로그램, 규제를 적용하는 공권력의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규제영향분석(RIA), 공공협의 이행, 기존 규제의 평가 등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7. 규제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총괄하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설계한다. 이는 규제관련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되 일관되게, 또한 이해의 충돌, 편견, 부적절한 영향 없이 내려지는 것에 더 많은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8. 규제의 합법성과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규제 체제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내리는 결정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의 효과성을 보장

한다. 시민과 기업이 이러한 시스템을 적절한 가격에 접근하고 시기적절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 전략을 규제의 설계와 실행에 적절하게 적용한다. 이는 규제가 특정대상을 목표로 하고 효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담당자는 규제가 어떻게 실행될지 평가하고 대응적 집행과 시행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10. 적절할 경우, 초국가, 국가, 국가하위 정부수준 간 규제의 일관성을 촉진한다. 정부수준 간의 공통되는 규제문제를 식별하고 규제 접근법의 일관성을 촉진하고 규제의 중복과 충돌을 피한다.
 11. 하위정부 수준에서의 규제관리 역량과 실적의 발전을 지원한다.
 12. 규제방책을 만들 때 같은 분야 내의 협력을 위해 관련된 국제 기준과 체계를 고려하며, 적절하다면 이들이 분야의 당사자들에게 끼칠 만한 영향도 고려한다.
- II.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규제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책을 추구하는 현명한 규제를 사용하고, 본 권고안에 담긴 원칙은 불가결한 부분인 부속서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을 고려하기를 추천한다.
- III. 본 권고안을 전파하도록 회원국과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 IV. 비회원국이 본 권고안을 고려하고 고수하도록 요청한다.
- V. 규제정책위원회가 본 권고안의 이행을 주시하고, 관련 OECD 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 뒤 3년 내에 보고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은 2012년 3월 22일에 채택되었다.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부속서

1. 규제 품질에 대한 명시적인 범정부적 정책을 위해 정치적 최고수준에서 노력한다. 정책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득이 비용을 넘어서고 분배효과가 고려되며 순 편익이 최대화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목적과 집행체제를 가져야 한다.

1.1 규제정책은 정부가 정책과제를 식별할 때 정책도구로서 규제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통해 규제를 만들고 채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규제와 규제체계가 공익을 피하도록 보장하는 명확한 정책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 ▶ 정책목표 식별부터 규제 설계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규제의사결정을 할 때 계속적인 정책주기를 채택한다.
- ▶ 적합할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사용하며, 이 때 정부규제의 질 개선에 대한 위원회 권고안을 적용한다.
- ▶ 규제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며, 이는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주요부분으로서 사전 영향분석과 사후 평가를 포함한다.
- ▶ 규제정책 목표, 전략, 그리고 혜택을 명확히 한다.
- ▶ 구식이거나,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식별하여 삭제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존 규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 규제품질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도록 소통전략을 개발, 집행, 그리고 평가한다.

1.2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 정책, 기관, 그리고 도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모든 정부 수준과 모든 부문이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법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입법부가 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 ▶ 영향분석과 행정간소화 등 구체적 항목들은 중요하지만 포괄적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 ▶ 규제가 경쟁력과 경제발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한다.
- ▶ 부문별 정책을 집행하는 규제를 준비할 때 규제정책원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규제가 무역, 경쟁, 그리고 혁신을 촉진하며 이것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 공익을 피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실천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직적 위험을 줄인다.
- ▶ 규제의 영향과 규제과정을 모니터링한다.
- ▶ 타당한 규제목표는 타협하지 않되 행정적 비용과 준수 비용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1.3 규제정책이 적절하며 효과적이고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고 조정가능하도록, 정부는 전략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한다. 규제 개입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일지를 고려하고 식별하는 전략적 역량을 포함하여, 기존의 규제가 필요한 수준으로 대중을 보호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기능이다.
 - 1.4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공식적이고 구속력있는 정책선언서를 정부가 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규제정책 도구와 절차 사용에 관한 지침서가 포함된다. 규제시행을 포함한 규제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체제와 자원이 적합하며 규제간극을 메우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 1.5 규제정책은 실적에 기초한 규제를 선호하도록 되어 하며,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촉진해야 한다.
 - 1.6 규제정책은 장관들이 각자의 직무내에서 규제정책을 실천할 책임사항을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특정 장관에게 규제품질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 운영을 유지 및 개선하고, 규제 거버넌스 과정을 위한 감독과 지도력을 제공할 정치적 책임을 할당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장관의 역할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부처 간 규제개혁활동 조율의 모니터링과 보고
 - 의도한 결과 대비 규제관리 시스템의 실적에 대한 보고
 - 규제정책 설정과 규제관리관행 전반의 개선점 식별
2. 규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포함한 개방정부의 원칙을 고수한다. 이는 규제 시 공익을 피하며 규제에 영향을 받고 관심을 갖는 자의 타당한 필요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규제제안 초안 작성과 이를 위한 분석의 품질관리 준비 과정에 대중이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온라인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규제가 포괄적이고 명확하며 당사자들이 쉽게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 2.1 정부는 규정수립에 대한 개방적이고 균형잡힌 공공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하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2.2 정부는 기존규제와 개발중인 새로운 규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들과 다음과 같이 협력해야 한다:
 - 전달되는 정보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를 규제수립과정과 협의과정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영향평가분석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협의하고, 예를 들어 협의과정의 일부로서 영향분석을 사용한다.
 - 보충분석을 포함한 규제서류 중 모든 관련문서와 규제 의사결정의 이유,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능한 한 공개한다.

- ▶ 규제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규제평가를 설계하며, 우선순위 결정, 규제평가, 간소화 제안서 작성을 포함한 평가의 설계와 집행 과정 내내 이들과 꾸준히 협력한다.
- ▶ 규제가 시장 내 다양한 경제 참가자들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2.3 규제와 규제체계에 대한 정기적 실적평가를 도입하고, 이 때 당사자들이 받는 영향과 그 영향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물을 대중에게 전달한다.

2.4 조사와 집행에 관한 정책과 관행이 집행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와 시행을 통해 순수한 공익을 극대화하며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한다.

2.5 모든 규제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하고 최신식의 법·규제 데이터베이스 최신본이 인터넷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가능한 형태로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2.6 정부는 규제본문이 쉬운 말로 작성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규제본문은 또한 규제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적극적으로 규제정책 과정과 목표를 감독하고, 규제정책을 지지 및 집행하고, 그럼으로써 규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메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한다.

3.1 규제감독을 맡고 있는 상설기관은 정부 수뇌부와 가까운 곳에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규제가 범정부적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제도적 해결책은 각 거버넌스 시스템에 맞춰져야 한다.

3.2 규제감독기관의 권한은 법규 또는 행정명령과 같은 명령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영향평가의 질에 대한 평가나 자문과 같은 기술적 기능을 할 때, 그 기관은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되어 있어야만 한다.

3.3 규제감독기관은 수준 높고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능 또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 이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영향평가의 질에 대한 평가와 영향평가가 부족한 규제제안의 반려 두 가지를 통한 품질보장
- 규제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잠재적 가능성 살펴보기 - 이는 규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규제조치를 촉진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 규제정책 집행의 체계적 향상에 기여하기

- 정책 개정과 사전방법 개정을 위한 사후평가 조정하기
- 영향평가와 사전방식 개선전략에 대한 교육과 지침 제공하기

3.4 감독을 맡은 기관의 영향평가를 포함한 실적을 규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4.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이하 RIA)을 새로운 규제제안 수립 시 정책과정의 초기단계에 통합시킨다.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식별하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가 정책목표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지 평가를 한다. 규제 이외의 방법을 고려하며 최상의 접근법을 식별하기 위해 분석된 여러 접근법 간의 장단점을 식별한다.

4.1 규제의 중요성에 비례하는 사전영향평가 관행을 채택하고,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인지 식별하는 장기간의 분배상 영향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규제로 인해 복지가 받는 영향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포함시킨다.

4.2 사후평가정책들은 구체적인 정책수요의 식별, 또는 시장실패의 수정과 같은 규제의 목표나 규제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시민의 권리를 지킬 필요성 등을 요구해야 한다.

4.3 사후평가정책들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 또는 수단의 조합을 식별하고 선정하기 위한 규제 및 비규제적 대안들을 포함하여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비실행옵션(no action plan) 또는 기본 시나리오는 항상 고려되어야만 한다. 사후평가는 대다수의 경우에 규제, 교육, 임의표준의 결합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방식들을 포함하여 사회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 방식들을 식별해야 한다.

4.4 규제안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경우엔 비용, 이익, 위험성에 대한 사전평가가 가능하다면 양적이 되어야 한다. 규제비용에는 회사, 시민, 정부가 부담하는 직접비용(행정, 재무, 자본비용)과 간접비용(기회비용)이 포함된다. 적절할 경우 사전평가는 형평성, 공평함, 분배효과와 같이 수량화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향에 대해 질적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4.5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제안과 함께 가능한 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분석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인풋을 얻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돕는 데

알맞은 형식으로 적당한 시간 내에 준비되어야 한다. 좋은 관행은 규제영향분석을 협의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다.

4.6 사전평가정책은 규제가 경쟁과 소비자복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 향상시켜야 하고 공익에 좌우되는 규제가 경쟁과정에 영향을 끼칠 경우 관계당국이 부작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규제가 갖고 있다고 주장되는 이익과 비교해서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규제의 목표들이 다른 덜 제약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4.7 평가를 이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며(가능할 경우 양적 및 금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장기적·공간적 영향을 고려한다.
- 국제적 공통도구를 채택하는 것이 식별된 정책이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개별국가나 국제시장에 방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일관성을 촉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행정비용과 준수비용이 어떻게 최소화 되는지 보여준다.

4.8 규제영향평가는 명백한 정책, 교육 프로그램, 자료수집과 사용을 위한 지침과 품질관리 메커니즘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초기에 통합되고 정부수뇌기관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5. 비용편익 고려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정책목표와 대조하여 주요규제를 평가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는 규제가 최신적이고 비용이 정당화되고, 비용대비 효과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5.1 규제영향분석법은 기존규제의 검토와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규제수단의 더 나은 디자인을 포함하여 규제의 효과와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경제적 효율성 증대정책의 일환으로 시민과 회사에 대한 규제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포함해야만 한다.

5.2 가능하면 모든 주요한 규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규제스톡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줄이며, 규제의 의도치 않은 주요한 잠재적 결과를 식별하도록 검토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비효율적 규제와 사용자에게 주요한 경제적 영향을 주거나 위험관리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식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본법 내 검토조항이나 하위법의 소멸시효와 같은 규정들을 포함시킬 경우 영구검토 메커니즘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5.3 검토체계는 경제, 사회, 환경 정책과의 일관성 달성의 진행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5.4 행정간소화 프로그램들은 가능하다면 규제의 총 부담을 측정해야 하고 시민과 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확한 대상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노력의 초점을 필요한 곳에 잘 맞추기 위해 질적 방식이 양적 방식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5.5 서비스제공을 보다 능률적으로 만들고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정보기술의 기회와 자격증, 허가증, 그 외 절차적 요구사항에 대한 원스탑숍(one-stop shop)을 활용한다.

5.6 시민과 기업이 정부와 상호작용을 통해 규제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수단들을 검토한다.

6. 규제정책 및 개혁프로그램과 규제를 적용하는 당국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그와 같은 보고서에는 규제영향평가(RIA), 공공협의관행, 기존규제의 검토와 같은 규제도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6.1 정부 내 규제제공 개선프로그램들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그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명확히 식별된 목표들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6.2 정보수집과 정보관리전략을 디자인하고 평가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은 피하면서 필요한 고품질 정보가 보고서 준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6.3 이해관계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외부검토기능을 강화한다. 규제감독기구에 의한 RIA평가가 예를 들어 감사원과 같은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6.4 간소화 및 개혁 프로그램들은 필요한 자원에 기초하여 그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공적 가치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소된 행정적 부담의 양에 앞서 평가는 우선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결과와 영향에 집중되어야 한다.

7. 규제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하는 일관된 정책을 개발한다. 이는 규제 관련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충돌이나 편견, 또는 부적절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일관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7.1 규제권을 특정한 단체에 부여하는 법은 그 법의 목적과 그 권한의 내용을 명확히 명기해야 한다.

7.2 규제시스템 내에서 규제기관들이 통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정부기관들의 공식기록을 수집하고 보유해야 한다. 그 기록에는 각 규제기관의 법정목표의 세부내용과 그 기관이 관리하는 규제수단들의 리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7.3 독립규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기관이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이어야 하는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같은 체계하에서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해 경쟁적 중립성이 필요할 경우

-규제기관의 의사결정이 규제를 받는 단체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주거나 기관의 공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7.4 규제기관이 청렴성, 정직성, 객관성,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부여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해주는 공공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7.5 규제기관은 법률a)과 지침b), 또는 다른 종류의 연성법c) 초안을 작성할 때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RIA 수행을 포함하여 규제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7.6 기관실적은 정기적으로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8. 규제의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공정성 검토1)와 규제제재를 가할 권한이 부여된 기관들이 내리는 결정을 검토2)하기 위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시민과 기업체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적절하게 결정을 받도록 보장한다.

8.1 공공기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시민과 기업체들은 권한행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제재(예, 규제에 따라 당국이 부과한 제재조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8.2 이 시스템에는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한 법적 절차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규제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포함된다. 또한 규제기관들이 자신들의 결정 근거로 사용하는 헌법적 규범을 포함한 상위 법 규범에 관한 법 규정의 적법성을 법정에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해야 한다.

8.3 원칙적으로 원래 규제결정을 내린 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에 이의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8.4 적절할 경우, 정부는 신청자들이 행정결정이 내려지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표준시간을 수립해야 한다.

9. 규제의 설계와 이행 시에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 전략을 적절히 적용시켜 규제가 효과적이고 선별적이 되도록 한다. 규제기관은 규제가 어떻게 실시될지 평가해야 하며 반응성이 높은 이행 및 집행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9.1 정부는 위험과 규제에 대한 그들의 전략을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공개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대중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활용과 관련하여 위험평가법, 위험관리법, 위험소통법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9.2 규제기관은 예를 들어 전문가 상호검토를 통해 중요하거나 새로운 과학적 문제들을 갖고 있는 주요한 규제안에 동반되는 위험평가검토를 위한 책임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9.3 재앙적이거나 조직적인 위험을 피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도치 않은 결과나 “위험 대 위험” 상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행위를 식별하고 알리는 위험전략의 역량과 비교하여 위험전략의 예상 효율성을 평가하라.

9.4 정부는 준수 및 시행 절차를 통해 준수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과 기업체에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에 기초한 접근법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9.5 위험에 기초한 기준에 대한 규제준수전략을 개발, 이행, 검토하도록 규제기관에게 요구되어야 한다.

9.6 예방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규제기관은 과학적 정보가 이용가능해질 때 책임성 있는 검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0. 적절할 경우, 초국가 정부기관, 국가 정부기관, 하위 정부기관 간 조정메커니즘을 통해 규제 일관성을 증진시킨다. 모든 수준의 정부에 있는 교차 규제문제를 식별하여 규제방식 간 일관성을 증진하고 규제의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한다.

10.1 모든 수준의 정부를 위한 규제정책과 규제관행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조정메커니즘을 설계한다. 적절할 경우, 조화를 위한 조치들을 활용하거나 상호공인협정을 통해 한다.

10.2 중복된 규제를 식별하고 개혁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초국가적 기구포함)에 해당되는 규제문제를 진단할 도구를 개발한다.

10.3 규제설계 시 효과적인 협의절차를 개발하고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전반적인 규제정책에 지역의 필요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하위정부들의 지역업체 및 시민과의 근접성을 활용한다.

10.4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규제 간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수준의 정부들 사이 정보공유 및 투명성 메커니즘을 장려한다.

10.5 다양한 관할지역들에서의 효과적인 기준점 활용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규제관행을 전파한다.

10.6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 규제방식상의 지역편차와 실험을 촉진한다.

10.7 규범제정권이 있는 초국가적 기관들은 이 권고안의 모든 관련 측면을 고려하고 적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11. 하위정부들의 규제관리 역량 및 성과를 발전시킨다.

11.1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고, 투자, 사업성장,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지역수준에서의 규제비용과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정부들이 규제정책과 규제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11.2 하위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평가 및 감소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이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11.3 법적 공백, 불일치, 중복, 중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개혁 및 간소화가 가장 시급히 필요한 분야들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하위정부수준에서 장려한다.

11.4 효율적 행정을 촉진해야 하고, 규제비용은 추가수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비용복구원칙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11.5 적절한 인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고 적절할 경우 전자정부와 행정간소화를 장려하여 하위정부 수준에서의 규제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11.6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시장의 매끄러운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것을 식별하고 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규제나 수정규제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하위정부들이 규제영향평가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사용한다.

11.7 관할권 간 수평적 조정을 촉진할 인센티브를 개발한다. 이는 내부시장의 매끄러운 운영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을 제거하고, 출혈경쟁의 위험을 제한하며, 지역관할지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11.8 하위정부들의 역할을 규제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중에 하나로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한다.

12. 규제조치 개발 시에 모든 관련 국제기준과 동일분야 내 협력을 위한 체제를 고려하고, 적절할 경우 그것들이 관할지역 밖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고려한다.

12.1 점점 더 세계화되는 경제 속에서 국제 규제협력이 조직적 위험관리와 장기적 정책기획에 필수적이 되어야 한다.

12.2 국제적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안 작성 시 관련 국제 규제환경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

12.3 정부는 그들의 국제조약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예, ILO, UN, WTO/GATT 협정. 이들은 외국제품과 서비스가 국내 제품 및 서비스에 비해 하등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2.4 정부는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분야에서 모범관행과 혁신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12.5 정부는 민간 또는 준민간 부문 협의를 포함하여 더 많은 국제규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국제논의에 기여해야 한다.

12.6 기존 규제와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공익을 성취할 수 있는 경우에 규제활동에 있어 노력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12.7 규제안 협의과정 시 외국과 국내 이익단체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부록1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 위원회 권고안의 배경노트

이 섹션은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위원회 권고안에 있는 원칙개발을 위한 배경노트를 제공한다. 이 섹션은 독자가 권고안에 있는 요소들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돕도록 의도되었다. 정보 제공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권고안의 일부는 아니다.

서론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안은 1995년에 채택된 규제 개혁과 관리에 관한 기존의 OECD 수단들을 확장하는데, 이는 규제정책의 문제들에 업데이트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이 권고안은 규제정책, 부처들, 규제기관, 경쟁기관에 의해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범정부적 수단으로서 규제 정책, 관리, 거버넌스를 다룬다.

금융위기는 올바른 인센티브를 동반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위해 잘 기능하는 규제체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강화하였다. 부문들과 국가들 간의 상호연결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들은 규제정책과 규제체도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명확한 규제체제는 환경과 평등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조건이 된다.

배경

OECD 장관들은 1995년에 OECD가 회원국들의 규제제도를 개혁하는 것의 의미, 방향, 수단을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정부규제의 질 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안은 회원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첫 국제성명이었다. 이 근본적인 배경에 근거하여, 그리고 다학문적 체제에 시장개방성, 경쟁정책, 미세경제학 원리를 포함시키도록 확대하여, OECD가 1997년에 규제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은 회원국들이 규제 정책 및 도구를 개선하고, 시장 개방성과 경쟁을 강화하고,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 권고사항들은 부문들과 정책분야들 모두에서 시행되는 회원국 국가검토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1997년 보고서 제안사항과 2004년까지 시행된 OECD 국가평가서의 증거에 기초한 규제 품질 및 성과에 대한 OECD 지도원칙은 그 당시 규제정책 진화상태를 반영한다. 이 원칙들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치적 노력의 중요성, 좋은

규제의 바람직한 특성들, 경쟁과의 관련성, 무역과 투자 장애물 제거를 보여 준다. 고품질 규제를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관리를 강조하는 이 원칙들은 APEC-OECD 통합 규제개혁 점검표로 보완되었다.

규제의 경쟁효과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2005년 지도원칙들에 더해 서, 경쟁위원회는 2007년에 경쟁평가틀킷을 채택하였으며 경쟁평가를 위한 모범관행방식을 통합하고 개발하였다. 수많은 국가들이 모종의 “경쟁평가”를 채택하였고 경쟁평가를 위한 방식들이 2005년 이래로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 음을 인식한 경쟁위원회는 2008년 초에 경쟁평가 권고안을 만들었고 2009 년에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권고안은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 책들을 찾고 경쟁에 덜 피해를 주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대안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들을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1995년 권고안과 2005년 원칙들이 적절하지만, 2010년 10월 28-29일에 열 린 국제 OECD 규제정책 컨퍼런스에서 보다 최근의 경험, 추가 검토, 규제정 책 위원회의 광범위한 명령의 관점에서 더 많은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고 인 정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년 간 규제개혁 관련 OECD가 쌓아온 경험을 종합해 놓은 OECD보고서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경제성장 지원과 공익 도모”는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집합적 사고의 수정과 업데이트를 요구하였다.

OECD에게 있어 규제는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규제는 정부들이 기업체들과 시민에게 요구조건을 내거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을 의미한다. 규제에는 법, 공식 및 비공식적 명령, 각 수준의 정부가 발행하는 부차적인 규정, 정부 가 규제권을 위임한 비정부 혹은 자체규제 기구들이 발행한 규정을 포함한다. 효과적인 규제 거버넌스는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규제를 생 산하기 위해 규제정책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기저의 공공정책 목표들을 충 족할 것이다. 이는 규제의 설계와 이행과 관련되며 준수를 보장하는 것에도 관련이 있다. 효과적인 규제 거버넌스는 규제 정책, 도구, 제도의 통합적 활 용을 암시한다.

이 권고안은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를 적절한 제도들이 뒷받침하는 규제 설 계, 시행, 검토, 평가의 정책 주기 내에 통합된 범정부적 활동으로 제시한다. 이 권고안은 정책주기 내내 조정, 협의, 소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한 이전의 OECD수단들에 비해 위험평가와 각 수준별 정부 간 조정의 필요 성과 규제기관의 조직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고안에 있는 원칙들은 모두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 제를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책, 도구, 제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들에게 제공한다.

이 권고안은 2011년 대중과 위원회가 참여한 철저한 절차를 거쳐 규제정책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 졌다. 초안 권고안의 초기 협의본은 2011년 4월에 규제정책 위원회가 심의하였다. 위원회의 견해를 담은 협의본은 그 뒤 공표되었고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이 뒤에, 개정판이 다른 OECD 위원회들과 사무국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다.

권고안 초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하였고 OECD 안과 외부로부터 많은 유용한 의견들을 받았는데, 특히 BIAC나 TUAC와 같은 학문 논평가들과 경쟁위원회와 공공 거버넌스 위원회로부터 많이 받았다. 투명성을 위해, 제출자가 승낙한 경우, 대중의 제출물들은 OECD 웹사이트 규제정책 섹션에 게재되었다. 이 협의과정을 통해 얻어진 조언은 규제정책 위원회의 2011년 11월 회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되었던 권고안의 초안을 크게 개선하고 발전시켰다. 위원회 대표단과의 긴밀한 논의 뒤 이루어진 권고안 내용의 최종 개선 및 개정이 있고 나서, 권고안 초안의 내용은 위원회 제출을 위해 2012년 1월 16일에 규제정책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권고안 내 원칙들 논의

1. 규제품질에 대한 명확한 정책

규제는 공권력의 세 가지 주요 도구 중에 하나이다(조세 및 지출과 함께). 경제와 사회의 안녕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고려할 때 규제는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규제정책이 다른 모든 정책들을 만들고 이행하는 것을 보완해 줄 때 궁극적인 수평적 정책으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규제정책의 목표는 규제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그래서 규제와 규제들이 공익을 도모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규제평가서들은 계속적으로 “범정부적” 정책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즉, 규제과정에 수반되는 여러 다른 기관들 간 상호작용을 역동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고 기능의 전통적 구획화가 만들어내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정부적”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은 정립된 정책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협력 메커니즘을 고안할 능력이 있음을 암시한다.

만일 중앙정부의 적절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관계를 구축하고 규제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범정부적” 관점이 필수적이라면, 규제품질 문화를 홍보

하는 것이 개혁결과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수의 나라에서 행정부가 규제품질의 필요성을 그들의 정책과정에 완전히 통합시키지 않았다.

규제구조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의회의 역동적이고 영구적인 역할이다. 정부는 규제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활발히 참여해야 하며 규제품질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을 때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설계할 때 기존 규제의 평가를 연결 지을 필요성을 암시하는 이 개념이 규제 거버넌스로 진화하고 있다. 규제 거버넌스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들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입법부, 사법부, 하위정부 및 초국가적 정부와 같은 다양한 참여자들과 민간부문 내 활동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설정 활동을 포함한다. 규제 정책, 도구, 제도가 OECD가 규제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방식이라고 옹호해 온 분석틀의 요소들을 구성한다.

국가검토서들은 모두 하나같이 규제개혁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규제품질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주된 요인들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효과적인 규제정책은 가장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채택되어야 하고, 규제품질의 중요성은 행정부 하위부서들에게 적절히 전달되어야 한다. 정치적 노력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규제품질을 촉진하는 임무를 맡은 중앙감독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규제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규제품질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노력을 보이기 위한 주요한 요소이다. 그렇긴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의 요구를 상의하달식의 개혁을 지지하거나 임원들에 의한 일방적 행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성공적인 리더십은 준수를 확보하는 것 보다는 동의를 얻는 것을 의미할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규제품질관리 시스템의 주된 요소는 규제개혁을 위한 원칙들을 고수하기 위한 명확한 정치적 노력이다. 정부는 규제 거버넌스 과정에 효과적인 리더십과 감독이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관리 및 개혁의 모든 측면에 있어 특정한 책임을 할당하고 명확한 책임성 체제를 만드는 것이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장관들에게 규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정책의 목표들을 이루는 데 정치적인 노력이 투입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규제관리 시스템 내 프로그램 임무의 범위는 복잡하고 정부 전반에 나뉘져 있다. 여기에는 규제품질대책이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직무 및 부문특수적 책무가 포함되며, 그 예로는 규제영향평가의 적용 또는 특정 정책분야에서의 규제개발을 위한 간소화 조치가 있다. 그러나 직무를 초월하여,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개혁 정책의 성공을 감시하고 촉진하는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책임성 체제는 규제관리체계의 요건이 장관들의 권한 내에서 이행되고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임무를 할당할 장관

들의 책임을 식별한다.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은 규제 거버넌스 과정에 리더십과 감독을 제공하고 장관들 간 규제개혁활동의 조화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 특정 장관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이 책임에는 규제관리체계의 실적보고서 준비와 규제정책환경과 규제관리관행에 총체적인 개선을 할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포함된다.

규제관리의 일부 측면에서 이 조직적 역할은 자신의 역할이 규제관리체계의 효율적 기능을 보완하는 다른 장관들의 기능과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대상 기능에는 규제의 법적 수준을 보장하고 입법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 하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정부 전반의 경제정책을 촉진하는 데 재무부 장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정책 책임을 어떤 특정한 역할을 대표 장관에게 할당하는 것의 장점이 있다.

사실 이 관행은 OECD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2008년에 24개의 회원국이 그들의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전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책임을 특정한 장관에게 할당했다고 보고했다.

2. 소통, 협의, 참여

규제정책은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자뿐 아니라 규제보호의 수혜자들도 고려해야 한다. 규제와 관련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는 시민, 기업체, 소비자, 근로자(대표 기관 및 협회 포함), 공공부문, 비정부기구, 국제 무역파트너, 그 외 이해당사자가 포함된다. 공익을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합친 것이라고 꼭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정책에 대해 공공지향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규제의 설계와 이행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정부는 규제안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사실을 수집하여 공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패를 억지하고, 투명성 강화와 공공참여 확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인다. 개방정부는 법 아래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접근권과 대우를 뒷받침함으로써 비차별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

대중은 아무런 제약 없이 무료로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규제 투명성을 높이고 재량권 남용 가능성과 공무원의 부패 가능성을 줄인다.

규제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소통, 협의, 참여 과정은 정부가 시민과 그 외 이해당사자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은 정부가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모으고, 준수도를 개선시키며,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반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그들에게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규제영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지각색의 협의도구가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협의방식은 적법한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에게 표현할 자원과 기회를 똑같이 얻지 못하고 이런 견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이 제안된 규제에 대해 숙고하고 규제제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규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미치는 규제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부가 인지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규제가 타당한 분야나 규제가 불필요하게 부담스러운 분야에 대한 개혁에 더 잘 집중하도록 해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규제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장혁신을 뒷받침하고 또한 행정부가 효과적인 규정제정자라는 신뢰를 대중에게 심어 줄 수 있다. 규제를 설계할 때 정부는 규제비용이 기업체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가해지는 부적절한 영향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3. 규제감독

정치적 책임성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규제감독기구들이 자체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규제기관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기관들이 감독을 받아야 하듯이, 규제감독기관들도 국가원수, 장관, 입법부, 대중 등에 의한 감독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규제감독기관에 부여되는 권한의 유형은 기관이 갖는 권한의 근원에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입법부가 제정한 법규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나중에 입법부의 검토를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는 반면, 대통령령 또는 국무총리령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행정부 내 부차적 규제감독에 제한될 공산이 크다.

규제감독기관이 정부 내에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할지는 다양한 고려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감독기관은 국가수반이 감독하는 정부 수뇌부에 위치한다. 규제감독기관을 재무 또는 경제 관련 부처에 위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수뇌부가 규제감독을 시행할 제도적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감독기관들을 위한 혼합형 제도구성도 가능하다. 즉, 여러 다른 감독책임을 결합하여 다양한 정부수준에서 운영되는 기관

들의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외부 감독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 예로 정부의 개혁 인센티브의 진행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문단을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규제감독은 전문지식에 기초해야만 하고, 규제안과 규제옵션, 그리고 이들이 업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훈련된 전문직원이 감독해야 한다. 기술적 지식은 규제들의 중대한 영향, 상충관계, 대안을 드러내주고, 정치인들, 정책결정자들, 그리고 대중에게 규제의 장래성과 위험 모두를 알려준다.

4. 통합 규제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공공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알려주는 도구이자 의사결정과정이다.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통해 규제의 증거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규제도구 중 하나이다.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 전 비규제적 대안을 포함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방법을 찾고 고려하도록 지원하여 규제를 더 잘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게 하는 한 방법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 관련 증거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수단의 비용편익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사회에 최대한의 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잘 만들어진 규제영향평가(RIA)는 규제안에 내재해 있는 상충관계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규제의 분배효과로부터 이득을 누가 얻을 것인지¹⁾,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²⁾, 한 분야에서의 위험감소가 정부정책의 다른 분야에서 위험을 만들어 내는지³⁾를 식별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촉진할 수 있다. 종합적 RIA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다. RIA는 정책제정시 증거사용을 개선할 수 있고, 식별된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식별할 수 있으며, 전례 없는 규제나 규제가 분명히 필요한데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규제실패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사용은 자원이나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부적절한 적용이나 정치권 또는 관료들의 저항으로 인해 자주 방해받는다. RIA는 때때로 정책제정의 대안물로 잘못 인식된다. 사실 RIA는 규제가 필요한지와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보조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강화하도록 의도되었다. 적절히 초점을 맞추면, RIA는 절차적 장애물이 아닌 정책개발에 통합될 수 있다. OECD 경험에 따르면 자원제공을 충분히 받는 규제감독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영향평가를 정책 및 규정 제정과정에서

통합하고 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기관들은 규제분석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영향평가의 질을 검토해야 한다.

영향평가과정은 예를 들어 로드맵, 가능한 규제이니셔티브 조기공고, 관련 협의, 영향평가, 협의단계 규제영향평가 활용을 통해 새로운 규제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협의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의견과 함께 협의의 결과가 가능한 많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적절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이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포획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공동규제와 같은 보완적 조치를 포함한 전통적인 “명령과 통제” 규제의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하는 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활용되도록 보장한다. 경험에 따르면 정부는 내재된 무기력a), 위험회피b), “규제 먼저, 질문은 나중에” 문화c)를 극복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그와 동시에, 공공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통제와 같은 일손이 부족한 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5. 기존규제 검토 - 사후 규제평가

사후 영향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들을 평가하는 것이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부 상황에서는, 사후 규제분석이 사전 분석보다 진행 중인 정책토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예로는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압박 하에서 규제가 개발되었을 때를 들 수 있다. 규제목표가 명확한지, 성과와 제도적 자원의 할당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이용할지를 포함하여 사후평가를 위한 성과기준을 정책주기 초반에 고려해야 한다. 부족한 정책자원을 가지고 기존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후 평가가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제검토를 조직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용적인 방법들에는 일몰조항 또는 주기적 규정의무평가 활용, 검토프로그램, 기존 규제를 변경하는 것을 대중이 제안할 수 있는 상설메커니즘 등이 있다.

의미있는 검토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검토절차의 설계와 조직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주요한 규제의 경우 검토수행은 규제를 감독하는 기관들과 독립되어서 수행되어야 한다. 규제는 보통 다른 규제 및 행정절차와 맞물려 활용되므로 검토과정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규제의 효율성을 살펴 봐야지 단순히 증분 또는 별개의 방식을 택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보완적 접근법들이 업계나 혁신촉진기회의 검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갱신과정이 없는 경우에 불필요한 요식의 양이 시간이 감에 따라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복잡해지고 회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요식행위는 중소기업들에게 특히나 부담스러운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행정기능에 투입되는 자원의 비율이 크기 때문이다. 요식행위는 공공부문에게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정부규제가 시민들, 기업체들, 공공부문에 주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 성과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전략의 일부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제부담을 줄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데, 그것은 행정비용이 정부가 규제대상기관들에게 부과하는 전체 비용에서 다소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보 및 의사소통기술의 빠른 발전은 정부가 시민 및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간소화하고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주는 기회를 활용해서 정부를 상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정부서비스 사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도록 정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규제정책의 성과 검토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과에 관한 정보는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 여부와 개혁이 의도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고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 규제성과척도들은 영향평가, 협의, 간소화 조치, 그 외 관행의 효과적 활용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요건들에 대해 기관들의 준수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

투명성은 규제개혁 프로그램 성과정보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특징이다. 투명성은 이해당사자들이 성과정보를 고려하고 그에 대해 언급하며, 기관들이 그들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검토 및 성과자료의 대중 공개에 달려 있다.

정부 내 규제는 정부가 정부의 관료들과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정부기관 혹은 지역정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우는 규제를 가리킨다. 자원이 희귀한 환경에서 정부 내 적용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이 시행하는 규제와 관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 행정적 부담 감축은 공공서비스 전달을 더 잘 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풀기 위해 내부 규제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한다.

7. 규제기관의 조직

특정 기관에 규제권을 부여하는 법은 그렇게 하는 목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법은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이 아닌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법의 적절한 수준과 법의 세부사항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원칙에 기초한 법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정책환경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규제기관이 기관의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문별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원칙에 기초한 법이 규제기관이 관리해야만 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제들을 유발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 규제기관의 거버넌스 방식이 대중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로부터 그리고 규제대상기관들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하면 결정이 공정하고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된다. 투자의 규제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기관의 결정이 의미있는 재정 및 시장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 과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공정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독립된 규제기능이 수립될 경우 규제기관이 부처 밖에 설립되어야 하는지(정부에 책임은 지면서) 또는 부처 내 행정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기관이 규제포획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 또는 그 권한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므로 책임성 체계가 규제업무의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규제기관들은 의회 또는 자신들의 정책분야 내 담당 부처에 의미있는 성과지표를 활용해서 목표달성과 기능이행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준수, 시행, 결정검토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는 주요 운영정책과 그 외 지침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규제기관들은 주요한 결정들의 공정한 내부검토를 위한 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제기관들은 규제결정의 독립적 검토를 받아야 하며, 특히 규제당사자들에게 주요한 경제적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꼭 있어야 한다.

규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면 상당한 행정적 효과도 가져온다. 한 규제기관의 활동들이 중복될 수 있고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그들이 규제하는 피해의 속성이 유사하거나(예,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같은 회사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규제기관들은 스스로를 규제의 통합 시스템의 일부로 보도록 장려되어야 하며 협력하고 서로로부터 학습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기능과 책임을 포함하여 규제기관들의 완전한 목록을 만들어 규제시스템 내 복잡성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8.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

규제기관들은 법적 권한 내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고, 유사 사건들을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며, 결정과 규제관행 이탈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원칙들을 법에 담고 효과적인 이의제기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을 막고 규제체계의 온전성을 보존한다.

이의제기절차가 빠르고 복잡하지 않으며 과도한 법적 비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편으론, 규제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법원소평이나 하찮고 번거로운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인센티브가 발생하게 되면 규제기관의 자원을 불필요하게 묶어버리고 규제 확실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필요한 모든 승인과정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침해소송이 명확한 시간 범위 내에서 종료되어야 한다. 규제기관이 침묵하는 것은 곧 동의를 의미한다는 법칙과 함께 결정을 고정된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규제기관의 대응성을 개선하고 일반적 상황에서 사안들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돕는 메커니즘이다. 복잡하고 특별한 사안의 경우 표준시간들의 예외사항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을 식별함으로써 좋은 관행이 촉진되고 그런 예외상황에서도 신청자들은 그들의 행정사안의 진척에 대해 공지를 받아야 한다.

9. 위험과 규제

규제는 인지된 어떤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규제해결책의 설계는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의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정부는 위험측정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어야만 한다. 적절할 경우, 정책안들은 잠재적으로 위험 상충관계가 있는지 점검 받아야 한다. 즉, 한 분야의 위험감소가 우연히 다른 분야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지 점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은 대응규제주기의 일부이다. 위험평가는 잠재적 위험의 범위를 식별 및 평가하고 인간, 재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과 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분석도구이다. 위험관리는 잠재적 처리의 고려하거나 가장 적절한 조치 또는 조치들을 선택함으로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해결책을 설계 및 이행을 가리킨다. 위험소통은 위험거래(risk tradeoff)를 할 때 대중에게 위험에 대해 교육하고 알리기 위한

방법들과 관행들을 의미하며, 위험정책주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위험의 속성과 위험관리책들에 대해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더 많은 관리를 통해 줄일 수 없는 위험요소들을 대중이 더 많이 수용하도록 만든다.

또한, 국제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규제기관들의 위험평가와 관리체계가 체계적 위험과 드문 재앙의 결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고안되어야 한다. 이것은 복잡하지만 지난 위기와 간신히 넘긴 사건들에서 얻은 교훈들을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규제기관들은 그러므로 가장 중대한 위험들에 자원을 식별 및 할당하기 위해 그들의 준수도 및 시행 전략을 평가해야 한다.

10.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의 규제 일관성

연방국과 단일국가의 차이에는 모든 국가들이 어느 정도 분권화된 제도적 배경의 범위와 다양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결 같은 점 하나는 분권화에서 비롯된 수준별 정부들 간 관계는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준별 정부들의 정책의무와 정책결과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잡한 관계여야 하며, 동시에 수준별 정부 간에는 수직적인 관계이고 같은 수준의 정부 내에서는 수평적이어야 하고 네트워크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준의 정부들에 의한 규제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동시장의 창출과 시민과 환경의 동등한 보호와 같은 국가적 경제 및 사회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관계들의 복잡성이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기능하는 정부의 능력에 잠재적인 수평적 및 수직적 간극을 만들어낸다. 이 간극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의무를 충족하는 정부의 재정적 역량 1), 정부수준 간 정보비대칭2), 행정적 책임성의 간극3), 하위정부수준에서의 기능적 경제 및 사회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행정적 경계4), 지역수준에서의 공동설계 혹은 운영을 필요로 한 교차부문 규제에 완전히 수직적 방식을 취할 경우 정책적 간극 발생5), 서비스 제공을 하기에 부족한 인적 및 인프라 자원6).

회원국과 비회원국은 이 간극들을 메우고 다단계 규제정책설계의 일관성을 개선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점점 더 많이 개발 및 사용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들 중에는 법적 메커니즘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과 토론의 장치처럼 “부드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 지방정부들이 규제제정과정에 참여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얻는 혜택이 비용을 앞선다. 이런 방식으로

규제개혁에 성공적으로 접근한 국가들은 규제과정의 재설계, 규제부담의 제거, 보다 조화된 대처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혜택들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하위정부들의 규제관리역량

각 수준별 정부들 간 협력은 하위정부들의 규제관리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들은 공무원들에게 조언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적절한 거버넌스와 재정 방식 및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정부들의 규제관리역량을 뒷받침하는 데 할 역할이 있다.

역량 간극에는 하위정부들이 국가규제를 이행할 능력뿐 아니라 규제 영향과 필요한 규제개혁의 평가를 포함하여 규제관리를 위한 자체 전략을 세우는 능력도 포함된다.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전략적이 되면서 하위정부들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가 많거나 지역 행위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특히 도시 및 시골 지역 전반에 걸쳐). 지역정부들이 이용가능한 정보의 특징(시민들 및 업체들과의 밀접한 접촉)과 포획의 위험, 혹은 공익의 좁은 개념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제한적인 역량이 모든 정부 수준에 걸쳐 규제의 이행과 설계에 영향을 준다. 정부수준 간 상호의존성이 공공정책에 스며들고 있고 국내 및 세계적 영향을 준다. 녹색성장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도시들은 세계의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의 76%정도를 배출한다.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도 적절히 이행되어야 한다.

12. 국제 규제협력

점점 더 국제화되는 경제 속에서 국제 규제협력은 시민들과 업체들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포함하여 위험관리와 장기 정책기획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국제 규제협력을 위한 공식화된 거버넌스 방식과 그것들의 실질적 결과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08년 위기는 금융부문에 있는 규제간극을 드러냈다. 에너지, 건강, 환경, 운송,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의 규제 관련 협조사안들도 눈에 띈다. 세계화는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한 국가의 국내 규제체계의 모든 평가에 경쟁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내 규제정책의제는 초국경적 위협의 문제들을 고려해야만 하고 국내에 영향을 줄

조직적 국제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해야만 한다. 정부는 규제가 자재와 서비스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와 규제체계가 공공정책목표들을 달성하고 규제체계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도록 보장하는 목표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최소한 정부는 법률제정시스템이 국외 이해당사자들에게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규제개발에 관해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 포럼에서의 규정수립은 좋은 영향평가관행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규제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규제접근법을 관련 국제기준에 기반을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WTO/GATT 협정과 같은 국제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 문헌

- OECD (199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including the *OECD Reference Checklist for Regulatory Decision Making*, 9 March 1995, OECD/GD(95)95, OECD, Paris.
- OECD (1997),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OECD, Paris.
- OECD (2005),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for Regulatory Reform*, OECD, Paris.
- OECD (2005),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 OECD, Paris.
- OECD (2009a),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Tool for Policy Coherence*,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09b), "Bridging the Gaps between levels of government", *Policy Brief*, OECD, Paris.
- OECD (2009c),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mpetition Assessment*, C(2009)130, OECD, Paris, 22 October.
- OECD (2009d), *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2009 Report*, OECD, Paris, December.
- OECD (2010a), *Better Regulation in Europe*, Reviews in 15 countries available online at www.oecd.org/gov/regref/eu15.
- OECD (2010b),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Risk and Regulatory Policy: Improving the Governance of Risk*,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0c),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Australia, Towards a Seamless National Economy*,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0d), *Consumer Policy Toolkit*,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1b), *Making the Most of Public Investment in a Tight Fiscal Environment – Multi-Level Governance Lessons from the Crisis*, OECD Publishing, OECD, Paris.
- OECD (2011c),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 Principles*, OECD, Paris, available at www.oecd.org/competition/toolkit.
- OECD (2011d),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 Guidance*, OECD, Paris, available at www.oecd.org/competition/toolkit.
- OECD (2011e),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Supporting Economic Growth and Serving the Public Interest*, OECD Publishing, Paris.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영국

멕시코

그리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칠레

한국

스페인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폴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일본

독일

스위스

터키

슬로바키아